

[첨부]

사업신청 서류

[서식 1] 사업운영계획서

[서식 2] 지방비 투자 협약서

[서식 3] 시·도지사 추천서

[서식 4] 상생협약서

[서식 5] 사업동의서 (건물주, 상인)

상권활성화사업 운영계획서

(사업명 : ○○○○ 상권활성화사업)

2019. . .

사·군·구 :

(직인)

〈 사업운영계획서 작성 요령 〉

1. 분량은 A4(13포인트)용지 20쪽 내외(겉 표지 제외)로 작성
2. 신청한 상권활성화 사업을 대상으로 작성
3. 간단한 참고자료나 이미지·도표 등은 본문에 삽입하고,
분량이 많은 관련 참고자료는 사업계획서 뒷편에 첨부
4. 제시 자료의 현실성을 담보토록 할 것
(제시자료의 허위, 비현실적인 자료나 데이터를 제시할 경우
지원대상 선정 시 배제 또는 불이익)
5. 작성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상세한 요령은 서식 내 설명을
참고하고, 서식 외 추가적인 자료작성 가능함
6. 첨부 서식(지방비확약서, 상생협약서, 동의서)은 제출 필수

제1장 사업계획 요약(※총 2페이지 이내)

신청기관	○○시·도 ○○시장 ○○○																																															
담당자	이름, 직책, 소속, 연락처 등																																															
사업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위치 : ○○시·군·구 도로명 주소 · 사업면적 : m² · 사업체수 : · 사업기간 : · 사업비 : 총 백만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분</th> <th>1년차</th> <th>2년차</th> <th>3년차</th> <th>4년차</th> <th>5년차</th> <th>계</th> </tr> </thead> <tbody> <tr> <td>국비</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지방비</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자부담</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계</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동의현황 : 상인·임대인 각 1/2이상 사업동의 및 상생협약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colspan="2">상생협약서</th> <th colspan="2">사업동의서</th> </tr> <tr> <th>상인</th> <th>임대인</th> <th>상인</th> <th>임대인</th> </tr> </thead> <tbody> <tr> <td>명/총명 (동의율%)</td> <td>명/총명 (동의율%)</td> <td>명/총명 (동의율%)</td> <td>명/총명 (동의율%)</td> </tr> </tbody> </table>	구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계							상생협약서		사업동의서		상인	임대인	상인	임대인	명/총명 (동의율%)	명/총명 (동의율%)	명/총명 (동의율%)	명/총명 (동의율%)
구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계																																																
상생협약서		사업동의서																																														
상인	임대인	상인	임대인																																													
명/총명 (동의율%)	명/총명 (동의율%)	명/총명 (동의율%)	명/총명 (동의율%)																																													
부처연계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관부처 : · 사업명 : · 최종 선정여부 :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현황 : · 사업기간 : · 총사업비 : </div> <p style="font-size: small; margin-top: 5px;">※ 증빙자료 첨부로 제출(내부결재, 공문 등을 제시) 미제출시 가점 불가(관계부처 의견조회 후 사실과 다를 시 불이익)</p>																																															
상권대표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성현황 : · 운영내용(요약) : 																																															
기초조사서	<p>※ 기초조사내용, 구역지정 승인신청 사유</p>																																															

<p>구역경계도</p>	<p>※ 고해상도의 그림파일 첨부</p>
<p>사업계획도</p>	<p>※ 고해상도의 그림파일 첨부</p>
<p>세부사업 내용</p>	<p>※ 환경개선사 및 상권활성화 세부사업내용 등 요약</p>
<p>상권관리 기구</p>	<p>※ 상권관리기구 운영 계획 요약 ※ 자치거버넌스(상권조합 등) 구현 계획 요약</p>
<p>연계사업 등</p>	<p>※ 관련 행정기관과 협의 결과 등 요약 ※ 타부처 연계사업 등 요약</p>
<p>기대효과</p>	<p>※ 정성, 정략 효과 요약</p>

I. 기초조사서

□ 상권활성화구역 요건

해당 구역에 포함된 시장 또는 상점가 개요	※ 대상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이미지, 지도 등 첨부
'국계법'에 따른 용도지역	※ 예정구역의 <u>100분의 50 이상</u> 이 상업지역임을 알 수 있는 자료 첨부
점포 수/ 업종 분포	※ 상권활성화구역 내 점포 수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의 요건 충족) - 예정구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의 인구가 50만명 이상인 경우 700개 이상, 50만명 미만인 경우 400개 이상
상업활동 위축여부	※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의 요건 충족시킬 수 있는 자료 - 예정구역에 있는 시장.상점가의 매출액 및 인구.사업체수(예정구역이 속한 행정동)가 신청일기준 최근 2년간 계속하여 감소(매출액, 인구, 사업체수 모두 2년간 계속 감소하여야 함에 유의)

□ 대상 구역의 종합적 여건

- ※ 인구, 산업, 상업, 토지이용 현황, 공간 등 대상 구역의 종합적 여건(필요성, 타당성 등)에 대하여 기술
- ※ 지역여건, 상권특성, 상권쇠퇴 현황 등 대상구역 지정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중심으로 작성

< I. 기초조사서 작성요령 >

- 가.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대상지역의 기초조사서는 인구·산업(특히 상업)의 현황, 토지이용 상황 등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대상 구역의 종합적인 여건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 내용 중에서 당해 시·군·구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조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 나. 기초조사는 각종 문헌이나 통계자료의 수집 등을 방법으로 활용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통하여 자료를 조사하여야 한다.
- 다. 기초조사는 기준년도를 중심으로 실시하되, 기준년도의 자료를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한 항목은 과거자료로부터 추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 라. 타 법령의 규정 또는 공공기관에 의하여 이미 조사된 공식적인 자료가 있을 때에는 이를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1년 이내의 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1년 이내의 자료수집이 어려울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자료를 사용하도록 한다.
- 마. 미래 변화를 예측하는 데 필요한 통계자료를 가능한 한 최근 10년간 이상의 것을 사용하며, 현황자료의 신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료의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 바. 수집된 자료는 시각적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표형태로 변환하거나 대표성 있는 수치를 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 사.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을 위하여 인접한 지역의 일부지역에 대하여 기초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아. 기초조사를 통하여 각 해당 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지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 자. 기초조사서는 다음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임을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해당 구역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에 대한 이해
 - 해당 구역을 포함한 주변지역의 발전과정과 현재의 모든 기능을 파악하고 이해
 - 해당 구역의 당면과제를 파악하고 원인과 해결방안 모색 자료로 활용 및 활성화를 위한 지표로 활용
 - 해당 구역과 인접지역의 상호간의 관계와 전체의 구조를 이해
 - 조사 자료의 지속적인 축적

II. 상권활성화 구역

□ 지정 사유

※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사유를 기술하고, 필요성 서술

- 기초조사를 토대로 신청한 상권활성화구역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상권활성화를 위한 합리적인 발전방향과 해당 구역이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되어야 하는 논리성과 타당성중심으로 기술
- 최근 2개년간 매출액 변동사항, 빈 점포 추이, 유동인구 등 기초특성을 파악하여, 상권의 변동에 대해 기술

□ 구역 경계도

구 분	내 용
위 치	**시 **동 ** 일대
종합 위치도	※ 상권활성화구역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적도, 위성지도, 사진 등을 활용하여 이해가 용이하도록 작성
면적	m ²
특성	※ 상권활성화구역의 특성에 대하여 상세하고 일목요연하게 제시

< Ⅱ. 상권활성화 구역 작성요령 >

- 가. 기초조사를 토대로 신청한 상권활성화구역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상권활성화를 위한 합리적인 발전방향과 해당 구역이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되어야 하는 타당성에 대해 기술하여야 한다.
- 나. 신청대상지 주변지역의 관광지 등과 같은 집객력 있는 요소와 연계성 있는 프로그램 개발계획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 다. 최근 2개년도 이상의 매출액 변동사항, 종사자 규모, 빈 점포 추이, 유동인구 등 기초특성을 파악하여 상권의 변동에 대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 라. 상권활성화구역의 표시에는 도시계획과 지적이 포함된 축적 1:1,000 이상의 지형도면에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해 시·군·구의 규모 및 상권활성화구역의 면적에 따라서 축적을 조정할 수 있다.
- 마. 상권활성화구역은 상업지역을 주된 대상으로 구역을 지정하는 것이나, 반드시 상업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할 필요는 없으며 당해 시·군·구의 판단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분만을 구역대상으로 할 수 있다. 또한, 용도지역이 상업지역 아닌 용도지역도 일부 포함 할 수 있다.

Ⅲ. 세부 사업내용

사업목표 및 전략

※ 체계적이고 실행가능한 전략을 각 부문별로 제시할 것

사업추진체계

※ 지자체, 상권대표조직(상권관리기구), 협의회 등 사업관련 주체의 역할 등을 구체적 제시

세부사업 내용

※ 상권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내용을 계획한 연차별로 사업명, 추진주체, 사업내용, 계획기간, 사업에 필요한 조치사항 등의 내용

※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통한 특색있는 상권 구현

※ 상권활성화사업 환경개선, 활성화사업(테마별 운영 등) 세부 사업내용을 작성 및 제시 (변화된 가상 상권 그림 등 제시)

사업계획도

※ 고해상도의 그림파일 첨부
상세설명 必

타부처 연계 사업내용

※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사업과 연계 사업 내용, 추진 방안 등

< Ⅲ. 세부 사업내용 작성요령 >

- 가. 상권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내용을 연차별로 사업명, 추진주체, 사업내용, 계획기간, 사업비용, 자원조달 방안, 사업실시에 필요한 조치사항 등의 내용으로 개략적으로 작성한다.
- 나. 상권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내용을 계획한 연차별로 사업명, 추진주체, 사업내용, 계획기간, 사업실시에 필요한 조치사항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다. 사업계획 기간은 5개년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라. 타부차 연계사업은 상권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물리적 구역과 일정부분 중복되어야 하며, 타사업과 연계 시 해당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내용과 현실적으로 추진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IV. 자치 거버넌스(상권관리기구 등) 구축 계획

구축 목표 및 전략

운영계획

※ 상권대표조직(임시기구)

※ 상권관리기구(정식기구)

- 조직도 제시, 조직구성, 주요역할(실행계획수립, 예산집행 등), 인력운영, 의사결정기구(협의회)운영, 향후 계획 등

상권조합 설립 지원방안

※ 자치거버넌스 구협을 위한 상권조합(임대인, 상인 등) 구성 및 운영 방안 등

관련 행정 및 중앙기관과 협의결과 및 조치계획서

연번	관계부서	협의내용	조치계획	비고
1				
2				
...				

상권활성화사업 주민 등 의견수렴

- 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상권활성화구역 지정(변경) 승인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

※ 회의록 등 요약, 첨부를 통해 의견서 작성

- 주민의견서

※ 회의록 등 요약, 첨부를 통해 주민의견 작성

< IV. 자치거버넌스 구축 계획 >

- 가. **상권대표조직**의 구성, 역할, 정식기구(상권관리기구)로 인계방안, 시기 등을 작성해야 한다.
- 나. **상권관리기구**의 조직 형태(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 이사회 구성방법, 상권관리기구 운영비용 조달계획, 직원 및 타운매니저 채용 및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 다. 상권관리기구가 상권활성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자문을 위하여 **상권활성화 협의회**를 운영해야 하며 그 구성원 및 운영방법 등에 대해 기재하여야 한다.
- 라. 상권 자생력 확보 및 지속적 성장을 위해 단기, 장기적으로 **상권주체(임대인, 상인 등)**로 구성된 **조직(협의회, 조합 등)**을 구축하여 자치 거버넌스를 구현·정착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 마. 상권활성화구역에서 수립한 사업계획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으로 시설 결정되어야 하는 시설이 존재할 경우 해당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결과 및 조치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바. 또한 기타 관련 기관 및 행정부서와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도 해당 결과와 조치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사. 구역 내에 존재하는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의 상인조직 등이 해당 구역을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변경) 신청을 요청한 경우, 해당 상인조직의 **총회 기록 요약**을 첨부하여야 한다.
- 아.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에 있어 해당 구역 내 **상인이나 주민의 의견을 설문조사나 공청회** 등을 통하여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자. **주민의견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정리하여 작성하며, 구역의 특성에 따라 내용을 참조하여 조사하되 필요에 따라서는 내용을 가감할 수 있다.
 - 주민의견 조사의 방법과 시기
 - 응답자 성별, 나이, 사업자·종업원·관계자 형태, 매장의 소유형태, 매장 규모, 매출규모 등
 - 구역지정에 대한 주민·상인의 찬성 수 및 반대 수
 - 해당 활성화구역의 시급한 개선사항 등
- 차. 구역지정에 대한 동의서 양식은 [서식4]를 참고하되 지역 특성에 맞는 별도 양식을 작성하여 사용가능하며, 주민의견 수렴방법은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 해당 시·군·구가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동의서 제출현황을 요약하여 제출하고 현장평가 시 징구한 동의서를 평가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V. 소요예산

예산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소요예산	산출근거	비고
환경 개선	사업명	0000	0000(%)	
활성 화				
조직 운영				

※ 민간경상보조금은 토지 매입, 건물 신축 등 자본 형성을 위한 시설비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경상비(운영비) 성격의 기반시설(건축물로 등록될 수 없는 야외무대, 공연장, 상징조형물 등) 설치 가능

연차별 사업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명	사업예산 조달내역								
		1차년도				2차년도			
		국비 (%)	광역 (%)	기초 (%)	자부담 (%)	국비 (%)	광역 (%)	기초 (%)	자부담 (%)	
환경 개선	사업명	-				-				
		-				-				
활성화										
조직										

※ 민간경상보조금(은 토지 매입, 건물 신축 등 자본 형성을 위한 시설비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경상비(운영비) 성격의 기반시설(건축물로 등록될 수 없는 야외무대, 공연장, 상징조형물 등) 설치 가능
※ 조직운영 간접비는 총 사업비의 20% 이내 편성(사용용도, 단가, 물량 등 세부내역 작성 별첨요, 향후 사용내역 등에 대해 조사 등 예정)

사업예산 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국비	광역	기초	자부담	총계
환경개선	사업명	-	0000(%)	0000(%)	0000(%)
		-			
활성화		0000(%)			
조직운영					

< V. 소요예산 작성요령 >

가. 민간경상보조금은 토지 매입, 건물 신축 등 자본 형성을 위한 시설비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경상비(운영비) 성격의 기반시설(건축물로 등록될 수 없는 야외무대, 공연장, 상징조형물, 구조물 등) 설치 및 공사는 사용 할 수 있다.

* 상권대표조직, 상권관리기구 등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간접비용은 총 사업비의 20% 이내 편성

나. 소요예산은 가능한 단기목표계획과 중기목표계획을 구분하며, 조속히 필요한 사항은 단기목표계획으로, 해당 구역에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나 시급성이 낮은 사업은 중기목표계획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다. 해당 지자체가 비용부담이 많은 사업부터 단기목표로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VI. 기대효과 등

정량적 효과

※ 구역지정과 사업시행에 따른 기대효과를 정량화된 데이터로 제시할 것

수치목표	현황	1차 목표	2차 목표	3차 목표	4차 목표	5차 목표	최종
유동인구	0000명						
매출액							
일자리							
젠트리피케이션							

정성적효과

※ 유동인구(고객), 매출액, 일자리창출, 젠트리피케이션(상생협약 등 증가) 방지,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의 사업추진 관련한 효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지방비 투자 협약서

○ 사업명 :

우리 _____시(도) 및 _____시(군, 구)는 중소
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상권활성화사업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 부담 사업비 _____ %를 투자계획에
의거 차질 없이 확보하여 지원할 것을 약속합니다.

2019년 월 일

(시·도비가 있는 경우)시·도지사 : (직인)

_____시·군·구청장 : (직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상권활성화 사업 지방자치단체 추천서

아래 지방자치단체를 상권활성화사업 지방자치
단체로 추천합니다.

사업명			
지자체명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추천사유			

2019년 월 일

추천인 OOOO 시·도지사 :

(직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상권활성화 사업 추진 동의 및 상생협약서

본인은 _____ 시장(상점가) 건물주·상인대표로서 2018년 아래 상권활성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① 임대 조건(5년 계약 및 임대료 동결, 5년 경과 후 ___년 동안 임대료 동결 또는 ___% 이하로 인상)에 동의하며, ② 상권활성화 사업에 따른 법과 지침, 절차를 준수할 것과, ③ 상권환경개선,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합니다.

< 상권활성화 사업 내역 >

- 사업명 : 2018년도 _____ 상권 상권활성화 사업
- 사업내용 : 쇠퇴 상권 환경개선 및 활성화 사업 등
(사업계획서 별첨)
- 총 예산 : _____ 백만원(국비 _____ 백만원, 지방비 _____ 백만원, 자부담 _____ 백만원)
* 불임 : 동의자 명부(_____ 명)

2019년 월 일

상인 대표 : (직인)

임대인 대표 : (직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상권 상권활성화 사업 동의자 명부 (임대인)

아래 명부에 서명한 임대인 () 등 ()명은 ___시(도) ___시 (군·구청)에서 추진하는 _____시장 2018년 상권활성화 사업계획의 내용에 동의하고 사업에 적극 협조 및 동의할 것을 서명합니다.

< 동의자 명부 >

No	건물 주소	성명	사업계획 확인	동의 비동의	서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	※ 제출방법 1. 서명을 포함한 한글 원본문서 스캔 후 제출 2. 서명을 제외한 동의자 명부를 엑셀로 작성 및 제출				

2019년 월 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귀하

상권 상권활성화 사업 동의자 명부

(기존상인)

아래 명부에 서명한 _____상점가(시장 등) 상인 () 등 ()명은 ___시(도) ___시(군·구청)에서 추진하는 2018년 상권활성화 사업계획의 내용에 동의하고 사업에 적극 협조 및 동의할 것을 서명합니다.

< 동의자 명부 >

No	업종	상호	주소	성명	사업계획 확인	동의 비동의	비동의 사유	서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	※ 제출방법 1. 서명을 포함한 한글 원본문서 스캔 후 제출 2. 서명을 제외한 동의자 명부를 엑셀로 작성 및 제출							

2019년 월 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귀하

전통시장법 제2조 제4호 4. "상권활성화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해당되는 곳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 가. 시장 또는 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된 곳
-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이 100분의 50 이상 포함된 곳
- 다. 해당 구역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 라.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출액 감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구역의 주요 상업활동이 위축되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

전통시장법 제19조의2(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변경)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직접 또는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지정 또는 변경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공보(이하 "공보"라 한다)에 고시하고 시·도지사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변경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전통시장법 시행령 제8조의2(상권활성화사업의 지원대상, 지원한도 등) ① 법 제19조의7제1항에 따른 상권활성화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시설·고객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 교통체계 개선 등 고객 접근성 향상 및 환경 개선 사업
2. 공동 마케팅, 공동 상품·디자인 개발 등 공동사업
3. 빈 점포 활용, 청소 및 노점 관리 등 상권관리사업
4. 고객 및 지역주민 대상 문화시설 설치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유치사업
5. 관광(테마)거리 조성, 축제·홍보행사 개최 등 상권홍보사업
6. 상권활성화구역 내 오래되고 낡거나 심하게 훼손된 상업기반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

전통시장법 시행령 제3조의2(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① 법 제2조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말한다.

1.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하 이 조에서 "예정구역"이라 한다)을 관할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의 인구가 50만명 이상인 경우: 700개
 2. 예정구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의 인구가 50만명 미만인 경우: 400개
- ② 법 제2조제4호라목에서 "매출액 감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예정구역에 있는 시장·상점가의 매출액 및 예정구역이 속한 행정동(「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동을 말한다)의 인구·사업체수가 최근 2년간 계속하여 감소하는 것을 말한다.